

심판위원회규정

제정 1976. 3. 1.
개정 1995. 3.28.
전부개정 2015. 3.20.
전부개정 2017. 8.23.
개정 2019.12.12.

제1장 총 칙

제 1 조(근거 및 명칭) 사단법인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정관 제46조 및 제48조제3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레프리’ 는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진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12.>

제 2 조(목적) 위원회는 골프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레프리의 독립성 및 자율성, 레프리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9.12.12.>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 및 자격을 취득한 등록 레프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12.12.>

② 각급 연맹체(이하 ‘연맹’ 이라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맹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규정을 정하고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과 각급 연맹 규정이 상이할 경 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체육회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2.>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12.>

1. 레프리가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레프리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2. 레프리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3. 레프리 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4. 레프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5. 레프리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6.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2.12.>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 5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이하 <개정 2019.12.12.>
3.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개정 2019.12.12.>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2. 정관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12.>
3.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4. 경기인(지도자, 선수 및 레프리)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2.>
5.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6. 여성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2.>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장을 지명한다. <개정 2019.12.12.>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조(위원의 위촉 및 자격)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8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개정 2019.12.12.>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12.12.>
7. 기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는 본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사의 정족수 등)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12.12.>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12.>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12.12.>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협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신설 2019.12.12.>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설 2019.12.12.>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9.12.12.>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제13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2.12.]

제 3 장 레프리(등록 및 관리) [제목수정 2019.12.12.]

제14조(레프리 등급) 레프리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12.12.>

1. 국제 레프리 <개정 2019.12.12.>

가. R&A TARS 80점 이상 합격자 중 영어 능통 가 능통하고 5년 이상 협회 레프리로 활동한 자 <개정 2019.12.12.>

2. 국내 레프리 <개정 2019.12.12.>

가. 1급: R&A TARS 80점 이상 합격자 중 5년 이상 협회 레프리로 활동한 자
나. 2급: R&A TARS 60점이상 합격자 또는 협회 레벨2 룰 세미나 90점 이상 합격자로서 2년 이상 협회 레프리로 활동한 자 <개정 2019.12.12.>

다. 3급: 협회 레벨 2 룰 세미나 80점 이상 합격자 또는 R&A TARS 수료자

제15조(레프리등록 및 활동) ① 레프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레프리 자격을 취득하거나 회장이 특별히 임명한 사람으로 협회가 정한 절차 및 경기인등록규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레프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이 협회 레프리로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레프리의 자격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협회의 심의를 거쳐 레프리 자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④ 레프리의 등록 취소는 경기인등록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19.12.12.>

제16조(정보 제공) ① 협회는 등록 레프리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레프리 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체육

회 규정에 따라 협회와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 요청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② 레프리 활동 실적발급은 협회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2.12.>

[제목개정 2019.12.12.]

제17조(레프리 교육) ① 레프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협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규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보수교육시 현장 실습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② 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자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2년 이상 등록된 레프리는 임기 내에 협회 및 대한체육회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제18조(룰 세미나 운영) ① 레프리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해 레프리의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골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9.12.12.>

② 룰 세미나 운영은 협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9.12.12.>

③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레프리의 수준 및 교육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9.12.12.>

2. 강사 구성은 골프룰 전문가를 협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3. 교육에 참가하는 레프리에 대하여 룰 세미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정 2019.12.12.>

④ 교육에 참가한 레프리는 협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12.>

⑤ 협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9조(연맹별 교육실시) ① 연맹은 매년 정기적으로 레프리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레프리 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레프리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해당 단체별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제20조(레프리 평가) ① 위원회는 레프리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② 위원회는 레프리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위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레프리 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③ 위원회는 매 경기마다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레프리 기피 및 제척) ① 대회전에 배정된 레프리를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레프리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사무처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친인척은 그 경기에 해당 선수 관련한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레프리 배정) ① 레프리는 대회별로 배정된 치프레프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대회조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② 협회는 골프 룰 세미나와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레프리를 우선 배정한다. <개정 2019.12.12.>

③ 신입 레프리는 최초 1년간은 보(保)로 배정받아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제23조(레프리 판정) ① 레프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레프리 관련 규정과 위원회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레프리는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9.12.12.>

③ 치프레프리는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당해 단체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회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④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해당 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레프리의 품위) ① 레프리는 협회 또는 해당 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② 레프리는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③ 레프리는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④ 레프리는 협회 및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관련 규정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⑤ 레프리는 오심과 편파판정에 대하여 ‘회원종목단체규정’, 해당 연맹, 협회 또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⑥ 레프리는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레프리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12.>

⑦ 레프리로서의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 <개정 2019.12.12.>

⑧ 경기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

⑨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단, 협회와 협의 후 가능)

⑩ 협회 대회 이외의 타 대회의 레프리로서 참가 시 지급된 유니폼을 착용할 수 없으며 개인복장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⑪ 협회의 레프리의 직위를 이용하여 협회 사업 외 영리 목적의 개인 자격 활동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12.>

제25조(레프리의 상벌) ① 레프리의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레프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 또는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12.12.>

② 오심 누적 시 레프리 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레프리의 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제26조(레프리의 포상) ① 레프리 평가 및 교육 우수 레프리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레프리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② 우수 레프리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레프리 매뉴얼) 레프리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12.12.>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976. 3.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2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2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직전 임기(2014-2015) 경기위원들 중 자격 미취득자가 2016년 재 위촉될 시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자격) 관련한 자격 취득의 유예기간은 2년으로 한다.

부 칙 <2017. 8.2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12.1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